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04. 7. .
제출자 구미시장

□ 개정이유

- 선산보건소 보건진료원의 인력보강을 위한 정원 증원
- '04. 6.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읍면동기능전환추진팀장의 한시 기한을 “여유기구제” 운영시까지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1,400 ⇒ 1,40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75 → 1,377명(2명 증원 - 별정7급상당)
 - 조정내역 : 선산보건소 → 2명 증원

구분	계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5급	6급	7급	8급	9급	6급상당	7급상당	9급	10급
정원	53	1	3	11	17	7	10		2	2
금회	2							2		
조정	55	1	3	11	17	7	10	2	2	2

- 읍면동기능전환추진팀장 한시기한 연장 → “여유기구” 설치시까지
 - 존속기한 : 2004. 6. 30 → 2005. 6. 30(1년간)

□ 참고사항

- 경북도 자치행정과-5357('04. 7. 2)호의 구미시 보건진료원 정원 승인
- 경북도 자치행정과-5358('04. 7. 2)호의 읍면동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처리지침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400”을 “1,402”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375”을 “1,377”로 한다.

조례 제503호(2003. 1. 9)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제3항중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로 하고 “2004년 7월 1일”을 “2005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원의 총수) ----- ----- <u>1,400명</u> ----- -----	제2조(정원의 총수) ----- ----- <u>1,402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1,375명</u> 2.(생략)	1. ----- : <u>1,377명</u> 2.(현행과 같음)
조례 제503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조례 제503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②(생략) ③----- <u>2004년 6월 30일</u> ----- <u>2004년 7월 1일</u> -----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②(현행과 같음) ③----- <u>2005년 6월 30일</u> ----- <u>2005년 7월 1일</u> ----- -----